

## 5.18民主化運動등에관한特別法案

|          |  |
|----------|--|
| 議案<br>番號 |  |
|----------|--|

提案年月日：1995. 12. 19

提案者：法制司法委員長

### 1. 提案經緯

1995年 9月 22日 趙舜衡, 辛基夏, 朴相千, 趙洪奎, 姜喆善, 朴光泰, 吳坦, 李吉載, 李沅衡, 林福鎮, 張石和, 鄭祥容議員外 53人이 發議한 5,18 光州民主化運動의眞相糾明등에관한特別法案, 1995年 11月 13日 張基旭, 姜秀淋, 姜昌成, 姜熹瓚, 金末龍, 金元基, 金元雄, 金種完, 柳寅泰, 朴啓東, 朴錫武, 朴 一, 申鎮旭, 楊文熙, 元惠榮, 李揆澤, 李基澤, 李東根, 李相斗, 李章熙, 李 哲, 張浚翼, 鄭璣浩, 諸廷坵, 崔旭澈, 河根壽, 洪起薰, 洪英基, 黃義成議員이 發議한 12·12軍事叛亂 및 5·18內亂事件 處理特別法案 및 1995年 12月 2日 劉守鎬, 咸錫宰議員外 23人이 發議한 5·18事件 및 '92大選資金搜查를 위한特別檢査의任命에관한法律案을 審査한 結果 第177回國會(定期會) 第18次 法制司法委員會(1995. 12. 19)에서 이상 3件의 法案을 참고하여 委員會案을 提案하기로 議決함에 따라 이를 提案하는 것임.

### 2. 提案理由

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한 公訴時效停止등에 관한 사항등을 規定함으로써 이

러한 事態를 방지하며 國家紀綱을 바로 잡고 民主化를 定着시키며, 民族精氣를 함양하고자 이 法을 提案하는 것임.

### 3. 主要骨子

#### 가. 目的 (案 第1條)

이 法은 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한 公訴時效停止등에 관한 사항등을 規定함으로써 國家紀綱을 바로잡고 民主化를 定着시키며 民族精氣를 함양함을 目的으로 함.

#### 나. 公訴時效의 停止 (案 第2條)

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하여 國家의 訴追權行使에 障礙事由가 존재한 기간은 公訴時效의 進行이 停止된 것으로 보며, “國家의 訴追權行使에 障礙事由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犯罪行爲의 종료일부터 1993年 2月 24日까지의 기간을 말함.

#### 다. 裁定申請에 관한 特例 (案 第3條)

第2條의 罪에 대하여 告訴 또는 告發을 한 者가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 부터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檢事所屬의 高等檢察廳이나 그 檢察官所屬의 高等檢察部에 대응하는 高等法院 또는 高等軍事法院에 그 당부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도록 하고, 이 法 施行前에 第2條의 罪에 대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裁定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하며, 裁定申請에 관한 節次등은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해당 規定을 적용함.

#### 라. 特別再審 (案 第4條)

憲政秩序破壞犯罪에 해당하는 犯行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有罪의 確定判決을 宣告받은 者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再

審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하고, 再審의 請求는 原判決의 法院이 관할하도록 하며, 그 刑이 赦免되거나 失效된 경우에도 終局的 實體判決을 하도록 하고 再審에 관한 節次는 同再審의 性格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刑事訴訟法과 軍事法院法의 해당 條項을 적용하도록 함.

마. 記念事業 (案 第5條)

政府는 5·18光州民主化運動을 記念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바. 賠償擬制 (案 第6條)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補償은 賠償으로 보도록 함.

사. 賞勳치탈 (案 第7條)

政府는 5·18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賞勳을 받은 者에 대하여 審査한 결과 功章(勳章) 光州民主化運動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賞勳은 賞勳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敍勳을 취소하고 勳章등을 치탈하도록 함.

행복

5·18民主化運動등에 관한特別法案

第1條(目的) 이 법은 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한 公訴時效停止등에 관한 사항등을 規定함으로써 國家紀綱을 바로잡고 民主化를 定着시키며 民族精氣를 涵양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公訴時效의 停止) ①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의 公訴時效등에 관한 特別法 第2條의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하여 國家의 訴追權行使에 障礙事由가 존재한 기간은 公訴時效의 進行이 停止된것으로 본다.

②第1項에서 “國家의 訴追權行使에 障礙事由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犯罪行爲의 종료일부터 1993年 2月 24日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第3條(裁定申請에 관한 特別) ①第2條의 罪에 대하여 告訴 또는 告發을 한 者가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부터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檢事所屬의 高等檢察廳<sup>2</sup> 또는 그 檢察官所屬의 高等檢察部에 대응하는 高等法院 또는 高等軍事法院에 그 당부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이 법 施行전에 第2條의 罪에 대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決定이 된 事件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裁定申請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該當規定을 적용한다.

第4條(特別再審) ①第2條의 犯行을 阻止하거나 反對한 행위로 有罪의 確定判決을 宣告받은 者는 刑事訴訟法 第420條 및 軍事法院法 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再審의 請求는 原判決의 法院이 管轄한다. 다만, 軍刑法의 적용을 받  
지 아니한 者에 대한 原判決의 法院이 軍法會議 또는 軍事法院일 때에  
는 그 審級에 따라 住所地의 法院이 管轄한다.

③再審의 管轄法院은 職權으로 第2條의 罪를 범한 者가 그 罪로 有罪의  
宣告를 받아 그 刑이 확정된 事實을 調查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再審請求人이 赦免을 받았거나 刑이 失效된 경우에 再審管轄  
法院은 刑事訴訟法 第326條 내지 第328條 및 軍事法院法 第381條 내지  
第3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終局的 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再審에 관한 節次는 同再審의 性格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刑事訴訟法과 軍事法院法의 해당 條項을 적용한다.

第5條(記念事業) 政府는 5·18光州民主化運動精神을 繼承하는 記念事業을  
추진하여야 한다.

第6條(賠償擬制)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 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補償은 賠償으로 본다.

第7條(賞勳치탈) 政府는 5·18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賞勳을 받은 者  
에 대하여 審査한 結果 오로지 光州民主化運動을 鎮壓한 것이 功勞로  
인정되어 받은 賞勳은 賞勳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敍勳을 取消하고,  
勳章등을 치탈한다.

####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3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은 이 法 施行日  
부터 3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